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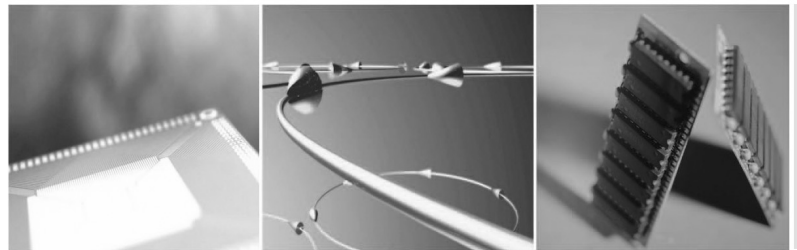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광대역통합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 행정상의 개선 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 방안

2004. 12. 20

김종보 · 이기욱 · 양인애 · 강홍렬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I BcN 구축과 관련된 건축 행정의 법적 쟁점과 단기 개선 사항

II BcN 구축에 필요한 건축 행정상의 장기 개선 과제

III BcN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형태

IV 조세특례제한법상의 BcN 지원 방안



김종보

- jb1260@hanmail.net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공동대표
- 현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기욱

- kiewooklee@naver.com
- 한양대학교 법학 박사
- 현 한국조세연구소 박사

양인애

- inaeya@kisdi.re.kr
-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강홍렬

- hongyol@kisdi.re.kr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미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박사
- 2001년 3월-2002년 2월 미국 UC, Irvine CRITO 객원연구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실장

◆ 본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각종 사업법 및 시스템구축과 함께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규율하는 공법규정의 정비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전기통신사업설비가 설치되기 위한 행정법들의 정비는 통합망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가 된다.

건축행정법의 영역에 존재하는 법령의 정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어렵고 전체 체계를 뒤 흔드는 복잡한 연구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또한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체계의 변화없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정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들의 조항을 손보는 작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를 보이면서도 법체계에 부담을 적게 주는 효율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단기적인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은 장기적으로 전체 체계와 모순되면서 법질서에 부담을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법제도의 정비는 단기적인 효과면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개별적 법조문의 개정작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러한 장기개선과제는 단기적인 연구로 방향을 설정하기도 매우 어렵고, 실제적인 자료수집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단기개선과제로서 선택된 법령은 도로법, 농지법, 건축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다. 이들은 예컨대 하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관점에서) 등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관련되는 모든 법에 대한 개정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제안되는 개정안을 통해 다른 법률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단기과제에서 중심을 둔 것은 개별 시설물의 설치기준, 설치와 비용문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조정제도 등이다.

한편,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은 시설투자를 비롯하여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방대한 물적·인적 투자를 요구하게 되는 바, 이는 곧 투자 자체가 기업에 대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감소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공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또한 수익모델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을 또한 불투명한 까닭에, 투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는 선진 지식정보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적시에 실현할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 아래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실체화하는 방법은 여러 방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조세지원책을 중심으로 세제 지원 방안의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I. BcN 구축과 관련된 건축 행정의 법적 쟁점과 단기 개선 사항

1. 도로법

□ 개 요

○ 도로법의 문제개요

- 도로법이 도로의 지하에 수용되는 공동설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문을 갖추고 있지 않아 통신사업자 중 유선사업자의 경우 도로의 부분적 점용허가 및 점용료, 이전비용 등의 문제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지 못함
- 통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법의 부분적인 제도개선만을 언급하기로 함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특허에 해당
-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관리청)의 재량행위로 해석되므로 점용료부과 외 기타의 부관(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됨
- 특히 점용료부과는 도로점용허가와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부담에 해당

□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

현행조문	개선안
도로법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법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의한 사업자의 통신설비설치를 위한 일시점용인 경우(추가)

현행조문	개선안
도로법시행령(별표2) 비고 3.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도로법시행령(별표2) 비고 3. 3. 점용료는 <u>실제점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되</u>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점용료의 근거 및 산정기준

- 점용료는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43조임
- 점용료 산정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
- 국 도: 시행령 별표 2 바로 적용
- 기타의 도로: 각 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상세히 정함

○ 도로법 제44조의 개정사유

- 도로점용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일시점용과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점용(영구점용)으로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에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산정기준을 규정함
- 일시점용과 기간점용을 구별하여 도로법 제44조제5호에 일시점용에 대한 점용료감면을 명시하고, 동법시행령 별표에서는 기간점용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신사업자의 비용예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별표2의 개정사유

-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실무상 실제 점용면적과 점용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법시행령 별표2이며, 제2호의 지하매설물 기준은 이미 그 지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별

- 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금액을 조절할 방법이 발견되지 않음
- 다만 <비고>란에서 연월계산법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 실제점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한다면 산정기준의 일부 보완이 가능함

□ 점용의 종료와 원상회복

현행조문	개선안
도로법제45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제45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점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거나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신설)

○ 문제점

-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지상의 도로점용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조문이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원상회복의 필요성판단에 대한 기준도 매우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도로의 점용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원상회복을 위한 도로굴착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여타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근거조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할 사항
 - i) 다른 지하시설물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공사하도록 명

할 수 있는 기준

- ii) 다른 시설물공사자와 이 조항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업자사이의 비용분담기준 등

□ 점용료감면과 부대공사비

현행조문	개선안
<p>도로법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 단서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u>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u></p>	<p>도로법제65조(부대공사비용)① 단서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u>점용당시 감면 받은 비율에 비례해서 부담한다.</u></p>

○ 현행 규정

- 도로법상 도로노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로 자체의 공사비와 그로 인한 부대공사비(지하시설물의 이전, 전신주의 이전 등)로 그 비용이 나뉘어짐
- 현행법에 의하면 도로노선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도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가 감면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가 부대공사비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점용료의 감면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한도에서 부대공사비를 부담하는 것

이 헌법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맞는 것이며 그 한도를 넘어 도로법이
부대공사비의 전부를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높음

○ 개선방안

- 현행의 도로법은 개정안과 같이 감면받은 비율만큼의 불이익을 점용자에
게 전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도로점용기준

현행조문	개선안
시행령(별표1) 1. 마. (3)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 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 의 거리를 <u>1.2미터 이상으로 할 것</u>	도로법시행령(별표1) 1. 마. (3)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 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 의 거리를 <u>1미터 이상으로 할 것</u>

- 별표에 의해 정해진 도로점용기준 중 전기통신관의 깊이를 1.2미터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과도한 것이라는 실무자의 주장에 따라 깊이를 1미터로 하
여 기준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이 제안됨

현행조문	개선안
시행령(별표1) 6. 도로의 복구 <u>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 이 유지되도록 하되</u>	시행령(별표1) 6. 도로의 복구 <u>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포장폭은 굴착폭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기존포장두께로 하며 필요시 간접복구비를 부과한다.</u>

○ 문제점

- 현행조문은 굴착공사의 범위와 관계없이 도로전체에 대한 복구공사를 요

구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개선방안

- 복구공사기준을 굴착범위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재굴착의 제한과 사업계획서 등

현행조문	개선안
<p>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p> <p>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u>10미터 이하이고</u>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개정 1985.10.16, 1996.7.16, 1999.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p>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p>	<p>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p> <p>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u>100미터 이하이고</u>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공사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u>〈개정 1985.10.16, 1996.7.16, 1999.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p>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p>

현행조문	개선안
<p>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0.16, 1994.9.16, 1999.8.6, 2003.6.30></p> <p>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p> <p>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p>	<p>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0.16, 1994.9.16, 1999.8.6, 2003.6.30></p> <p>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p> <p>2. 전기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또는 통신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인 경우</p>

1) 제1항: 사업계획서 제출의무관련

○ 개정방안

- 실무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면제대상을 현행 10미터미만에서 100미터 미만 등으로 조절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도로하부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면제는 타당한 것이 아님
- 사전에 허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허가의무는 폭넓게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시행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는 모두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정당할 것임

2) 제6항: 재굴착의 제한

○ 문제점

- 통상적인 지하시설물과 달리 통신설비는 통신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에 대한 대비 등으로 매우 신속한 공사가 필요

○ 개선방안

-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예외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호의 내용을

일부 가 수정되어야 함

-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와 같은 요건을 배제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공사 일반을 재규칙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농지법

현행조문	개선안
농지법제36조 (농지전용허가·협의)①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제36조 (농지전용허가·협의)①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 통신사업자가 4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의 의의

-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특별한 경우로서 농지법에 의해 정해진 농지의 용도를 개발가능한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정처분
 - 농지의 보존이라는 주된 목적과 함께 농지의 개발가능지로의 전용을 막는다는 의미
 -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변토지보다 개발이 강하게 제한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농지전용허가임
- 법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
-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할때 그 처벌이 매우 강함

□ 전신주의 설치와 농지전용

- 법적으로 좁게 보면 농지전용은 농지의 형상에 변화를 가하여 농지로서의 성질을 잃게 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농지상의 건축가능성을 부여하는 행위
 - 기존의 농지에 좁은 면적의 변화가 초래된다고 해도 전신주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법이 통제하고자 하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 따라서 실무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다는 자치단체로 견해가 대립
- 개선방안
 - 이론적으로는 전신주의 설치를 위해 4제곱미터 미만의 농지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성의 증감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
 -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에 명시적으로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농지전용허가가 불필요한 농지전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 농지전용과 민사문제

- 중계기의 설치를 농지 상에 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농지소유자와 부분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구획에 대해 농지를 전용하게 됨
- 문제점
 - 농지소유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장차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가격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4제곱미터를 넘는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한 필지가 분필되지 않은 채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법상의 준비도 필요함

3. 건축법(공작물 신고관련)

현행조문	개선안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 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 시설을 위한 철탑 7의2. 높이 6미터를 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통신용 전주를 제외한다)

○ 건축법상 신고 관련

- 건축법에서는 공작물이나 옹벽 등도 위험방지와 관련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정한 규모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부수적으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음(건축법 제72조)

○ 문제점

- 건축법의 위임을 받아 신고대상인 공작물을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철탑만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전주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선명하지 않음
- 실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장이 있는 것은 아님

○ 개선방안

- 동항 제1호의 6미터가 넘는 굴뚝에 관한 조항이나 기타 조항들을 종합할

- 때 전주는 나열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법적으로는 명시적인 태도를 취해 개정안과 같이 전주를 제외하고 철탑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전주에 대한 설비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작물설치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참고.

4. 정보화촉진기본법

현행조문	개선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②도로·철도·지하철도·상하수도·전기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②도로·철도·지하철도·상하수도·전기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문제점

-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전제로 시설관리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 조정을 통해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단기적으로는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조정을 강제화하는 제도개선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 가능
- 장기적으로는 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개별 시설관리자의 단위이익에 의해 거시적인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임

5. 개발제한구역법

현행조문	개선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9호 바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9호 바목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보망 구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계탑시설 및 <u>바닥면적이 30㎡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시설</u>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보망 구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계탑시설 및 <u>토지면적이 60㎡ 이하인 전기통신시설로서 중계탑시설</u>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질변경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익시설로서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시설의 신설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바닥면적이라는 개념은 우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내부면적을 지칭하며 용적률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이어서 중계탑과 어울리지 않는 개념임
- 예외로서 인정되는 중계탑시설이 이동통신용으로 한정됨

○ 개선방안

- 중계탑은 원칙적으로 공작물로서 내부면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적률이 별도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시 바닥면적이라는 표현을 토지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음
- 유선사업자의 중계탑도 설치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을 위한 중계탑시설로 예외가 한정되었던 것을 일반적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중계탑시설로 넓혀야 함

○ 토지면적을 현행법보다 상향조정하는 의미

- 통신기술의 발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최초에 설치된 중계탑시설에 부가적인 시설이 증설되어야 할 필요성 증가
- 사회기반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않는 시설은 오히려 넓게 허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불법적인 의도로 전용되지 않는 한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마련되어도 그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음

II. BcN 구축에 필요한 건축 행정의 장기 개선 과제

1.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결정문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진 사회기반시설을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제7호)
 - 원칙: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설치
 - 예외: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가능
-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수용권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 시설과 단순히 개별법상의 행위허가만으로 설치될 시설을 분류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넓은 범위의 시설은 가급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분류하여 국가 등 공공주체의 엄격한 형식적 통제 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문제

- 지구단위 계획의 연혁
 - 독일의 건설계획(B-Plan)
 - 1991년 상세계획구역이라는 제도로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
 -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와 통합되면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마련
 - 최근 도시지역 내 넓은 면적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개념

- 40~50개 필지를 하나의 도시계획단위로 하여 각 필지별 건축허용성, 건축허가요건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새로운 종류의 도시계획

○ 통신설비와 관련 문제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토계획법 제52조)속에 통신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하게 되면 장차 구속력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통합망의 구현이 강제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확보될 것임
- 지구단위계획 속에 반영되는 통신설비에 대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추가 연구 필요

□ 개발제한구역법

○ 개정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 오히려 적합한 구역(청소년수련시설, 방송시설 등)
-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위허가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동시에 전기통신설비의 구축근거 확보작업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단순한 전주, 중계탑의 수준을 넘어 장래 상당 규모의 통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매우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음

2. 건축법

□ 건축허가의 기준으로 설비기준

○ 건축허가요건 현황

-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으로서 위험방지요건, 건축설비기준(건축법 제55조)

등이 존재

- 설비규칙(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교부령)에 건축허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함

○ 개정필요사항

- 설비규칙 중의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통신설비가 주택 또는 상업시설의 내부에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함

□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구내망)

- 대규모 건축물은 그 시설의 규모면에서 하나의 도시에 준하는 성격
- 일반적 기준과 별개로 대규모 건축물(예컨대 63빌딩과 같은)에 대한 시설기준 필요

3.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주택법의 적용 영역

-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
-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건축법 제8조)는 주택법상의 사업승인(동법 제16조)으로 대체
- 건축허가요건 중 일부규정은 주택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건축법과 중첩적으로 적용

○ 주택법상의 허가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은 주택법상의 허가기준을 정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파트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내 다수의 세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특성으로 감안하여 별도 조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인입공사의 문제

- 배관설비에 대한 비용
 - 아파트 단지내 배관설비에 대한 공사비와, 단지외부에서 기간시설까지의 공사비로 구성됨
- 문제점과 개선연구필요성
 - 통상적인 인입공사비의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을 통신설비에 적용하는 것은 통합망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음
 - 비용에 대한 특례조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

4. 도시개발법 등 개발법제(도시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 개발법제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항상 구역지정이 선행하며, 구역지정과 시기적으로 동시(법에 따라 분리가능)에 개발계획이 수립됨
- 개발사업의 중간기간에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강요는 비용부담의 문제 야기
-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통신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필요함

□ 실시계획단계와 설비의 배치

- 도시개발법상의 실시계획,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 택지개발촉진법

- 상의 실시계획 등이 모두 건축허가에 준하는 것임
- 시설계획에 포함될 설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권리배분이후 정비기반시설의 귀속문제

-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 특정한 시설은 무상귀속됨(예
컨대 도시개발법 제65조 등)
- 통신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류 및 비용부담의 문제 검토 필요

5. 기업도시법

□ 공정거래법문제(조정제도)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은 개발법제의 변형된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통신설비 구축과 관련하여 한 두명의 통신사업자가 당해 도시 전체의 통신
시설을 구축할 위험성 있음
- 당해 통신사업자의 비가입 주민이 전입해 올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
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로도 전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이 필요함

□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

- 새로운 기업도시는 지구단위계획과 연동될 것이고 통신설비도 지구단위계
획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임

6. 정보통신관련법상의 조정제도

□ 기존망의 공동사용

- 통신설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의 공동사용 요청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중복설비 문제가 발생
- 중복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정보통신관련법에 마련되어야 함

□ 강제조정제도와 병행

- 기존망의 공동사용문제나 기업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속하게 운영되는 조정위원회가 제안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사업자나 기타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Ⅲ. BcN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형태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조세관련 총괄지원법의 제정

- 조세지원(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지원 부분을 포함하여)을 총괄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이 비교적 장기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시적인 총괄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조세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현재 정부가 조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조세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국가경제적 정당성에 관한 정부 내의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관련 조세법 개개 규정과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바, 조문의 정리 등 입법 작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음

2.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편입

-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내용의 하나로서 조세지원에 관한 부분을 편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점, 그리고 사업의 완료에 의하

여 얻을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국가적·사회적 편익의 방대함을 감안한다면,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 통합망의 구축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의 일부로서 조세지원에 관한 규정을 편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지원책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상술한 조세관련 총괄지원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감면의 원칙적인 축소정책, 다른 사업부문과의 형평성 및 정부 내 합의 도출 등의 난점이 존재하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법령 사이 어떠한 법체계를 유지시킬 것인지의 문제점도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음

3. 조세관련 법령의 개별적인 개정 방안

- 광대역통합망 구축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세목별로 해당 개별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 방안에 따르면, 예컨대, 법인세 세목에서의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방안, 세액공제를 증가시키거나 신설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해당 법령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됨
- 또한, 조세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다른 분야의 법령, 예컨대 상법 중 주식회사편 또는 증권거래법의 주식발행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주식발행에 관한 신설규정(예컨대, 광대역통합망

사업부문과 연동되는 tracking stock의 발행 등)을 두는 방안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지원책을 비교적 신속하게 법령 개정예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의 지원책이 상호 모순 또는 충돌한다거나, 지원책의 일관성 또는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음
- 한편,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바, 법인세법과 같은 조세관련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법에서 모두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조세 관련법은 조세의 기본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대부분의 조세특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 이 리포트에서는 조세 관련 법령의 개별적인 개정 방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IV. 조세특례제한법상의 BcN 지원 방안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제9조)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타 산업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손금에 산입액 가운데, 사용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하도록,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원이 이루어지는 준비금의 손금산입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부분만 인정함

2) 개선 사항

- 현행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범위에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수입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허용되도록 함
- 또한, 환입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및 환입기간을 일률적으로 현행의 3년보다

장기로 개정하는 방안(예컨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환입하도록,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 또는 일정기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환입하도록 하는 방안(예컨대, 사용분에 대해서는 2011년 사업연도부터 3년(또는 5년)간 균등환입하도록,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11년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손금산입 준비금의 범위를 2010년 12월 31일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는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즉,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개선 사항

-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의 4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만 인정되는 바,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질상 국책사업으로서의 공공성이 두드러지므로, 일반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사업과는 차별적으로 취급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광대역통신망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운데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2010년 12월 31일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 시설, 첨단 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부분으로 한정됨

2) 개선 사항

-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공공성을 근거로 ERP 등과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서,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하는, 예컨대 4% 내지 7%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를 2010년 12월 31일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에서는 도로, 전원시설, 수자원개발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항만시설, 신공항사업시설, 공항시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음
-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주체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지원방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하여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몰규정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준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개선 사항

- 대상시설에 광대역통합망 건설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 필요함
- 동시에, 감면주체에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 필요함
- 또한, 손금에 산입되는 준비금의 투자금액에 대한 비율을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환입처리 기간을 3년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일몰제한 기준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5.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는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례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선 사항

-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장기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투자 개시의 시한을 현행보다 연장할 것이 필요함
- 또한, 기준내용연수의 가감 폭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장기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적용대상자산의 범위 내에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특정하여 추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6.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서는 시행령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경우 15%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원사항

-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도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5% 미만의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7.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 그리고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의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배제 및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선 사항

-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행하는 통신사업자를 본 규정의 지원대상 법인으로 특정할 것이 필요함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특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8. 과밀억제권역내 광대역통합망 관련 장비 투자세액공제 허용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서는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디지털방송장비, 정보보호시스템, ERP 등, R&D 설비, 근로자복지시설, 환경보전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개선 사항

- 광대역통합망 사업은 차세대 지식정보화 시대의 필수 핵심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광대역통합망 관련 장비를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에 포함시킬 것이 필요함
-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여, 그 적용은 시행일 이전 사업 개시시점을 적정히 선정하여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9. 최저한세 미달분 감면배제의 특례 설정

1) 현행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 - 감면후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 이 경우 최저한세율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5%로 규정되어 있음

2) 개선 사항

– 최저한 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이 폭이 넓게 인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